

전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64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2.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49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B이 2019. 10. 24. 전북 완주군 C 답 1,476㎡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01874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이 2019.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1,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 ·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 ·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을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